

**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**

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■ 제출기한 : 2022.07.08.(금) ~ 2022.07.14.(목) 10:00 ~ 17:00(7일간)

■ 장 소 :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견본주택 [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72 (죽도동)] ☎ 1666 - 7400

■ 유의사항 :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 06. 16.) 이후 발급분에 한함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※ 대리 발급분 불가 •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)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• 기록대조일은 당첨자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Y로 발급)
	다자녀 배점 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추가 자격서류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	자녀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견본주택에 비치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에 한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군복무기간 10년이상을 명시)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해당자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		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 ※ 대리 발급분 불가
	위임장	본인	•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 중 택1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

**■ 해외근로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(※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)**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파견 및 출장명령서</li> <li>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</li> <li>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반드시 제출) :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(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)</li> </ul>
추가서류 (해당자 한함)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또는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 이하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</li> </ul>